

[일련번호 : 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자치회관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강료 출납부 미작성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자치회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자치회관 수강생 접수대장과 수강료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자치회관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